

서울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20454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204543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가합607018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수

담당변호사 양희근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정태학, 신기선, 유한나

변론 종결 2022. 6. 17.

판결 선고 2022. 7. 2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3. 선고 2020가합60701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2018. 7. 31.자 5억 원의 변제행위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2018. 7. 31. 체결된 5억 원의 증여계약' 또는 '2018. 7. 31.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한 5억 원의 변제행위'를 취소하고,¹⁾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 소외 회사는 2009. 7. 6. D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을 받았다. E, F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F'라고 한다),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는 소외 회사의 A에 대한 위 각 대출채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근보증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1	일반대출	2009.7.6.	2016.6.6.	420억	연11%(연25%)	546억	631억
2	종합통장대출	2009.7.6.	2016.6.6.	100억	연11%(연25%)	130억	

1	일반대출	2009.7.6.	2016.6.6.	420억	연11%(연25%)	546억	631억
합계	520억		676억	631억			

- A은 2013. 4. 30.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이후 소외 회사가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위 각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소외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 E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 5201999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8. 13. '소외 회사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789,851,0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다만, 연대보증인들은 각 근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E은 시행 및 건설 사업을 위하여 소외 회사, F, G, I 주식회사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고, 피고는 E의 배우자(처)이다.
 - 소외 회사는 2018. 7. 31. 피고에게 5억 원을 계좌 입금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 2018. 7. 31.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액수는 85,561,932,614원(= 미상환 대출원금 48,334,109,600원 + 미수이자 37,227,823,014원)이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 14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7. 31. 피고에게 5억 원을 증여하였는바(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이다), 위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설령 소외 회사가 2018. 7. 31.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한 것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당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는 소외 회사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려는 통모가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변제행위(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이다)는 역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증여 또는 변제)는 어느 모로 보나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5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위 5억 원을 지급한 것(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은 증여가 아니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에 해당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소외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

1)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5억 원을 송금할 당시(2018. 7. 31.)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855억여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초과상태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여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자금부족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2018. 7. 31.) 원고가 우선수익권을 확보하고 있던 담보신탁 부동산의 가액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액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원고의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담보권이 설정되어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의 액수가 85,561,932,61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제1,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와 A이 2009. 6. 17. 사업 및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 연대보증인인 F가 J 및 K 소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2017년 7월경에 이루어진 감정평가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우선수익권을 가진 위 각 담보신탁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51,732,000,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2018. 7. 31.)의 위 각 담보신탁 부동산의 가액이 위 각 감정평가 당시(2017년 7월경)의 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약 850억여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액(85,561,932,613원)은 원고가 우선수익권을 확보한 담보신탁 부동산의 가액(51,732,000,000원)을 훨씬 초과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가 우선수익권을 확보하고 있던 담보신탁 부동산의 가액이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초과한 상태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2009. 6. 17.자 사업 및 대출 약정서에 따른 대출원금 420억 원 중 약 360억 원에 대하여만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었을 뿐이고, 설령 약정대출원금(420억 원)만큼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중 약 120억 원 상당액은 원고가 다시 원고의 정기예금에 가입시켜 해당 금액을 대출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꺾기"에 해당하므로 이를 실제 대출액에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이 2009. 7. 6. 소외 회사에게 42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13,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A이 소외 회사에 위 대출금을 지급한 때로부터 약 2개월여가 경과한 이후인 2009. 9. 28. 소외 회사가 위 대출금 중 12,024,408,000원을 인출하여 5개의 정기예금에 각 분할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나(위 인출금액은 대부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기예금 가입행위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른바 "꺾기"에 해당된다거나, 위 각 정기예금 가입금액(합계 약 120억여 원)을 A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원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원금이 420억 원'이라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

1) 관련 법리 ○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두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때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성격 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리에 기초하여,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을 제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F에 1997. 12. 10. 4억 2천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0.까지 합계 2,692,070,000원을 대여(대여원리금을 새로운 대여원금으로 하는 대여계약 갱신 포함)하였고, 소외 회사는 F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F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가 2019년 4월경 F와 그 연대보증인들인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4.자 2019머556986호로 'F, G 및 소외 회사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7,024,090,040원 및 그 중 2,692,07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서 그 무렵 확정되었다.

○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① 2018. 1. 16. 339,203,720원을 변제기 2019. 1. 15., 이자율 연 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18. 4. 12. 600,000,000원을 변제기 2019. 4. 11., 이자율 연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위 각 대여 당시 피고와 소외 회사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만기 시 일시에 상환하기로 하고(제3조), 소외 회사가 상환일까지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된다(제4조)'고 약정하였다.

○ 소외 회사의 직원(L)은 2018. 7. 31.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대여금 채무 중 5억 원(대여금 채무 총액 939,203,720원 중 일부)을 피고에게 상환하고자 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당시 회장이던 E의 결재를 받은 후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다('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이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에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차용원금 2,692,0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연대보증금 채무와 합계 939,203,72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가 2018. 7. 31. 피고에게 송금한 5억 원은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피고의 F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이나 소외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 및 대여금 채권 등은 모두 해당 회사 관계자들과 E, 피고 등이 통모하여 허위 내지 가장의 채권채무관계를 주장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E, 피고, 관련 회사들의 관계 등을 비롯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의 성립 ○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F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각 대여금 채권을, 소외 회사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F, 소외 회사, G 등의 회사들은 모두 피고의 남편인 E이 자신의 시행 및 건설 사업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회사들이고, E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배우자인 피고에게 요청하여 자금을 조달해 오기도 한 점, ② 피고는, 위와 같이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에 E의 요청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하기도 하면서, 소외 회사 등의 자금 사정이나 '소외 회사에 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존재'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5억 원을 송금할 당시에 이미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거액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현저히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④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있기 이전에,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자신의 채권(소외 회사에 대한 위 연대보증금 채권 또는 대여금 채권)을 일부라도 변제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또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금

채무나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한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소외 회사의 회장인 E이 직접 '소외 회사가 피고(E의 처)에게 5억 원을 상환'하는 내용의 내부 기안서(을 제17호증)에 결재한 점, ⑥ 소외 회사의 위 내부 기안서의 기재 내용이나 피고의 이 사건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합계

939,203,720원(=339,203,720원+6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일부 변제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은 아직 각 변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고(이자 역시 변제기에 일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상환일까지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변제기가 자동 갱신되는 반면(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대출원금도 거액이고 원금 및 이자의 각 상환일도 이미 도과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소외 회사(구체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 및 소외 회사의 관계자들)는 E의 배우자인 피고와 통모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들(원고 포함)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만 위 5억 원을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에 관하여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나아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와 통모하여 소외 회사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위 5억 원을 변제받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한편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그 대출원리금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가액의 부동산(원고가 우선수익권을 확보하고 있던 담보신탁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3.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액(85,561,932,613원)은 원고가 우선수익권을 확보한 담보신탁 부동산의

가액(51,732,000,000원)을 훨씬 초과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2018. 7. 31.자 5억 원의 변제행위(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억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의 지급의무는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발생하므로, 연 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주장 중 일부(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의 성격)에 관하여는 이와 판단을 달리하나 결과적으로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바,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승준

판사안승훈

판사구태회

1)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명시적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지는 않았으나,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2018. 7. 31.자 5억 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계약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설령 위 금원지급행위를 변제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와 피고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그 변제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함께 하였는바(원고의 2021. 4. 27.자 준비서면 제3면, 2022. 3. 2.자 준비서면 제4면 등 참조),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청구취지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8. 7. 31. 5억 원의 금원을 지급한 행위는 증여 또는 변제에 해당하는데,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 위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로 선택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의 2022. 1. 24.자 항소이유서 제4면 참조.